

부천시자동차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따른청원처리결과

○ 청원내역

- 소개의원 : 김인섭의원('93. 4. 19)
- 청원인 : 한국노총택시분과위원회 이상기외 7인
- 의결일 : 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93. 7. 19)
- 의결결과 : 의견서 채택 부천시장에게 이송('93. 7. 19)
 -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구성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여야 된 것임.

○ 조치결과

- 보고일 : '93. 9. 13
- 내 용 :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 및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계획(개정안 발의)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

조 항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 ① 항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이내로한다.	위원회에 22인	3인교체 13인 보강
제3조 ② 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 소장 —감사담당관 —도시과장 —건설과장 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 소장	

조항	현행	개정	비고
		• 시의원 1명 • 교통전문가 2명 • 교통관계경찰 2명 • 여성대표 1명 • 회사택시근로자 대표 1명 • 회사택시사업자 대표 1명 •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1명 • 비스근로자 대표 1명 • 비스사업자 대표 1명 • 새마을시협의회장 1명 • 대학교수 1명 으로 한다.	사회산업위원회추천 교통개발연구원추천 부,중경찰서교통과장 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부천시의회청원심사결정에대한시의견

[청원사항 :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심의위원을 시민대표, 근로자대표, 회사대표 등으로 확대위촉]

□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현황(현재)

○ 구성

-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실장의 9인
- 심의위원은 시장이 위촉
- 간사는 교통행정과장, 서기는 교통행정개장

○ 성격

- 인도별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중차)의 심의
- 업종별 사업용차량 인·면허 심의
- 신설노선의 심의

□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결과수용(안)

-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교체 보장하여
- 본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보다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고자함.